



05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1.7. 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학원, 찜질방, PC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

‘2013년 소방방재 주요통계(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191,378개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화재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과 실내 구조 및 내장재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상시 잠재하고 있으며,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고시원의 경우 유사 숙박업으로 운용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과 주거시설의 위험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인구밀집형 영업장 구조 때문에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2008년 7월 25일 화재가 발생한 용인시 고시텔은 전형적인 별집형태로 60여개의 개인실과 미로형의 좁은 복도를 가지고 있었다. 밤 1시 25분경, 건물 9층 중앙의 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확산되면서, 사망 7명, 부상 11명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09년 화재로 주목을 끈 것은 부산 노래방주점 화재와 실내사격장 화재다.

부산 노래방주점 화재는 6층 건물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였는데 사망 8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3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화재 당시(2009년 11월 14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15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화상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최초 발화 후 3초 만에 강력한 화염과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다중이용업소 주요화재

화재발생일시	인명 피해	화재 사고명	화재 원인	지역
2001.05.16	사망10명, 부상23명	예지학원		경기 광주
2002.01.29	사망15명	유흥주점		전북 군산
2003.07.06	사망5명	다방		충남 당진
2004.01.12	사망4명, 부상4명	고시원		경기 수원
2005.09.02. 16:03	사망5명, 부상53명	사우나	유증기폭발 추정	대구 수성3가
2006.04.25.	사망1명, 부상7명	실내사격장※	화약불티	서울 서초
2006.07.19.	사망8명, 부상12명	고시원※	방화추정	서울 송파
2007.12.26. 17:18	사망5명, 부상2명	I. 오락실	부주의 (용접)	경기 안산시
2008.04.08. 04:30	사망5명	II. 음식점	전기적요인	제주
2008.07.25. 01:25	사망7명, 부상11명	III. 고시텔	방화의심 → 전기누전	경기도 용인
2008.08.20	사망3명(소방관)	나이트클럽		서울 대조동
2008.10.20. 08:15	사망6명, 부상7명	IV. 고시원	방화	서울
2009.01.14	사망8명, 부상1명	V. 노래주점	전기적요인	부산
2009.11.14	사망15명, 부상1명	VI. 실내사격장	화학적요인	부산
2012.05.05	사망9명, 부상33명	노래타운	전기적요인	부산
2013.02.17. 20:26	인명피해 없음. 재산피해 4.7억	음식점	방화	서울 인사동

※ 화재사례 제11집 수록

I. 오락실

1. 일반사항

- 소재지 : 안산시
- 사고일시 : 2007. 12. 26. 17시 18분
- 발화장소 : 지상5층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중 3층 오락실 입구
- 재산피해 : 30,700천원
- 인명피해 : 7명(사망 5명, 부상 2명)
- 벌화원인 : 부주의(용접불티로 인한 실화)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설명 및 출처

사진 1.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사진 중앙에 보이는 옥내소화전을 화재진압에 이용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72907>

사진 2.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바라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11571>

사진 3. 오락실 출입문(외부 복도 방향에서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11572>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지상5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슬라브 지붕)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오락실 철문 잠금장치 용접을 하던 중 용접공의 실수로 불티가 벽면과 천장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불이나자 용접공은 혼자 10여분간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고 건물의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4, 5층 모텔 손님들도 건물에 연기가 차오를 때까지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

3층의 오락실은 100여 m^2 의 공간에 성인 오락기 40여대가 다닥다닥 놓여 있었고 내부에는 비상구는

물론 창문도 없었다. 게다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출입구의 안쪽 문은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한동안 불이 난 줄도 몰랐다. 오락실에서 불법게임을 하던 손님들도 하나뿐인 출입문이 불길에 휩싸인 후에야 화재사실을 알고 대피하려 했지만 출입구는 막혀있었고 유독가스는 차올라 오락실에 있던 7명(사망5명, 부상2명)이 변을 당하였다.

불법오락실이다 보니 방염처리는 물론, 기본적인 소방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지 않았다. 오락실 벽면에는 섬유로 만든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그 안은 스티로폼 내장재로 차 있어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진 4. 오락실 입구 유리문 앞에서 용접을 통하여 철문에 추가 설치하려던 빗장걸이 및 용접기



사진 5. 오락실 내부 유리문(틀만 남음)과 복도 쪽 추가로 설치한 철문

사진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벽면과 철문이 열에 의하여 변색되었고, 철문에서는 열에 의한 변형과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리문과 철문 사이 공간에서 발화하여 오락실 내부로 확대된 것을 보여주는 벽면의 연소 패턴도 확인되었다.



사진 6. 3층의 모든 창문을 내부에서 합판으로 막음

3. 피해상황

5층 모텔 투숙객 등 5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오락실 손님 4명과 오락실 업주 등 5명이 유일한 피난경로인 출입문 앞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난하지 못하고 오락실 내부에서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 업소 종업원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II. 음식점

1. 일반사항

- 소재지 : 제주시
- 사고일시 : 2008년 4월 8일 04시 30분
- 발화장소 : 지상3층/지하1층(철근 구조 슬래브 지붕) 건물 중 1층 식당
- 재산피해 : 30,960천원
- 인명피해 : 사망 5명
- 발화원인 : 전기화재 추정



사진 1. 화재 진압하는 소방서 대원들 (뉴스스 인터넷 뉴스)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소방대가 도착하였을 때 지상1층 식당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기와 화염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분출되고 있었고, 2,3층은 불꽃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2층 유리창을 파괴하자 화염과 연기가 분출되었다. 출동 10여 분만에 1차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을 정리하는 도중 3층에서 숨진 일가족을 발견했다. 건물 내부는 목재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1층에서 3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획집 내부 가운데

설치된 계단뿐이어서 화재가 난 후 일가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음식점 주 출입문 옆에 있는 카운터 벽면 아래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탄 점 등으로 미뤄 일단 이곳에서 발화된 전기화재로 추정하였다.

3. 피해상황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5명(홍모(44)씨와 부인 천모(41)씨, 18살과 15살 딸, 10살 아들)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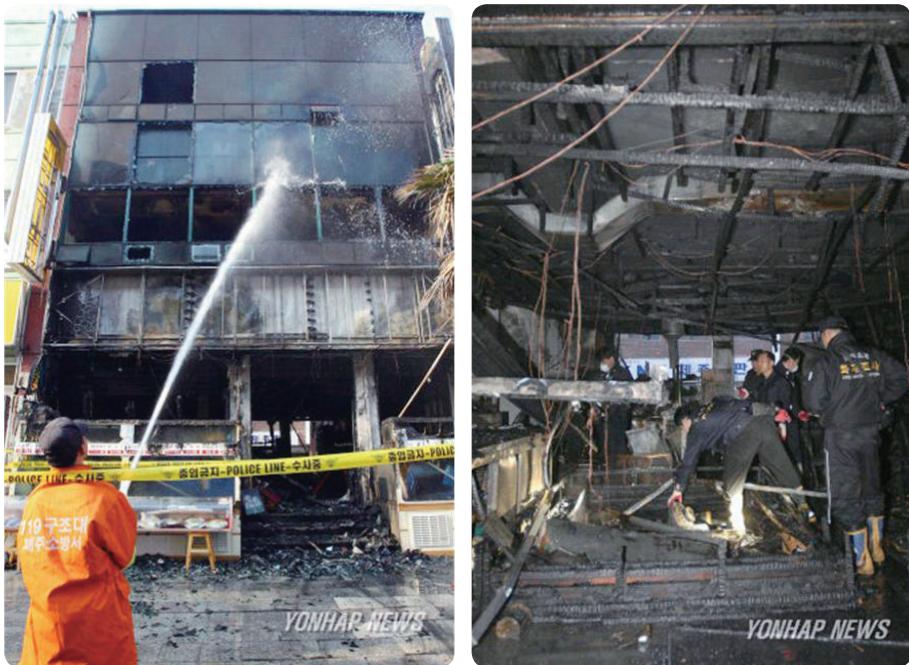


사진 2. 3. 제주도 음식점 화재 현장

사진 설명 및 출처

사진 2.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삼도2동의 횟집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 깨어진 창문의 유리 등을 떨어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3.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시 삼도2동의 횟집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III. 고시텔

1. 일반사항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008년 7월 25일 01시 25분 경
- 발화장소 : 지상10층 건물 중 9층 고시텔
- 재산피해 : 119,000천원
- 인명피해 : 18명(사망7명, 부상11명)
- 발화원인 : 전기누전(소방방재청 2008년 재난연감). 방화로 추정하였으나 국과수 조사 후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내림.

2. 건물현황

불이 난 고시텔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7,451.90 m²) 상가 건물의 9층(층 면적 559.9 m²)에 있었다. 내부구조는 면적이 6.6 m²가 채 안 되는 68개의 칸막이로 구획된 실들이 9층 전체를 별집형으로 채워져있고, 통로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걸을 때 비스듬히 비켜지거나가야 하는 구조였다. 계단실은 북측과 남측에 1개씩 2개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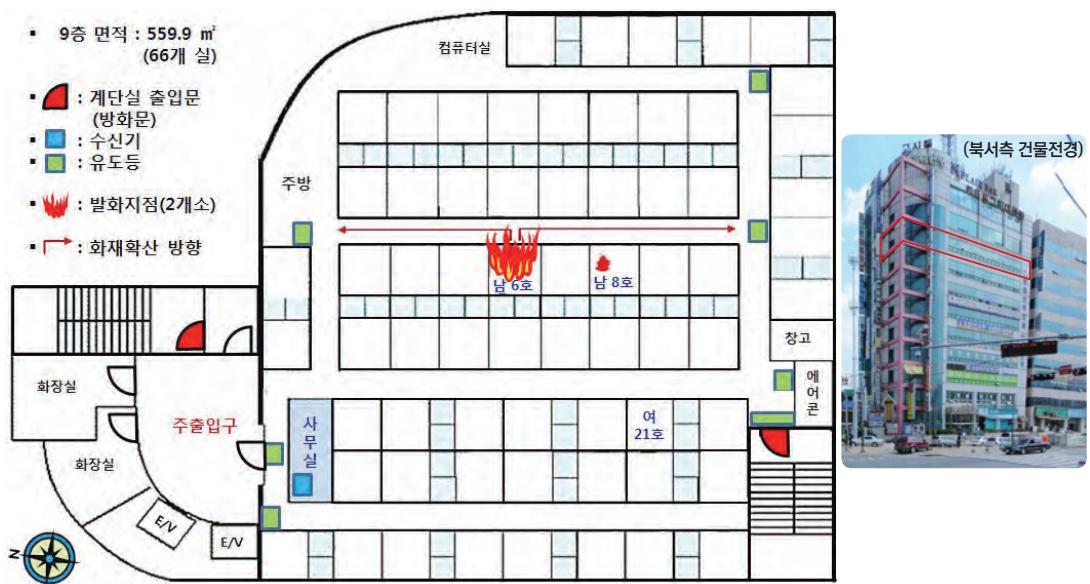


그림 1. 지상9층 고시텔 평면 및 화재상황

3. 화재상황 및 원인

고시텔 21호실에서 잠을 자던 관리자(여)가 비상벨 소리에 깨어 나와보니 비닐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6호실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치솟았고 급격히 천정 상층부로 화재가 확대되면서 유독성의 짙은 연기가 확산되었다.



사진 1. 발화추정 6호실 내부



사진 2. 6호실 앞 통로

고시텔 내부 $552.9m^2$ 중 약 $150m^2$ 가 소실되고 기타 연기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유독가스가 급격히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2분만인 오전 2시 7분에 진화되었다.



사진 3. 8호실 연소형태



사진 4. 통로 연소 및 농연 확산 (주출입구방향에서 봄)

현장조사 결과 8호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연소 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소화된 소실흔이 관찰되었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남자 6호실 내부가 전소되면서 통로 천정으로 출화된 형상이 관찰되었다. 6호, 8호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2지점 이상의 발화점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신원 미상자가 미상의 점화원을

사용하여 6, 8호실 내부 침구류 등 가연물질에 불을 붙여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방화로 추정되었다. 최종감정 후 6호실 냉장고 및 TV전원코드의 절연손상에 의한 전기합선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4. 피해상황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6호실과 8호실은 고시텔의 중간 지점이며, 사망자들은 6호실과 10m 정도 떨어진 고시텔 안쪽 복도와 방안에서 대부분 질식사했다. 빈방이었던 6호실에서 뿐어져 나온 유독가스만으로 순식간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림 2. 지상 9층 고시텔 화재 및 인명피해 상황

6호실은 1인용 침대와 책상, 옷가지가 모두 탔고 석고보도 재질에 벽지를 붙인 벽면과 천장도 소실됐다. 8호실은 침대 일부만 불에 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호실은 목재 재질의 문이 개방된 채 문도 모두 탄 상태였지만 바로 옆 7호실과 다른 방들은 전혀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재산피해(소방서 추산) 금액은 119,000천원이었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 원인

적은 연소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관리인 및 투숙객의 초기 화재대처 능력이 저조하였고, 건물 구조상 화재 시 발생한 농연의 배출이 불가능하여 화재 발생 수분 내로 질식에 의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1)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가진 많은 개별실로 구획되어 화재 인지가 늦었다.
- (2) 심야시간(01시 25분)으로 수면 중인 사람들은 화재인지가 더욱 지연되었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의 흡입, 복잡한 미로형태의 평면구조로 인해 신속히 피난을 하지 못했다.
- (3) 관리인은 소화기 등으로 자체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소방서로의 신고가 지연되었다.
- (4) 6호실 침대, 매트리스 등의 연소로 인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였다.
- (5) 외부 창을 석고보드로 막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었다.

IV. 고시원

1. 일반사항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20일 08시 15분
- 발화장소 : 고시원(3층)
- 인명피해 : 13명(사망6명, 부상7명)
- 발화원인 : 방화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2008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범인이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고시원에 불을 내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화재로 인한 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들을 무참히 짓누르 살해 및 중상을 입혔다.



사진 1., 2., 3., 4. 고시원 화재 현장

사진 1. 사진 2. 사진 3. 화재로 깨맣게 탄 고시원 내부. 최초 발화지점이 있던 B구역은 전체가 겹게 타거나 그을린 모습이었다. 화재가 난 맞은편 구역의 고시원 내부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여주듯 개인 물건들이 방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다. (연합뉴스)

사진 4. 화재현장 모습(소방방재청 블로그)

3. 피해상황

고시원의 3개 층이 일부 전소했으며 피해자는 중국동포를 포함 사망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범인은 방화,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V. 노래주점

1. 일반사항

- 소재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09년 1월 14일 20시 44분 경
- 벌화장소 : 지상6층/지하1층 건물 중 지하1층 노래주점
- 재산피해 : 30,100천원
- 인명피해 : 9명(사망 8명, 부상 1명)
- 벌화원인 : 전기적 요인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6층, 지하1층(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며 화재는 지하1층 노래주점에서 발생하였다.

최초 목격자인 남자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6번 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메캐한 냄새가 났고 비상구 및 7번 룸 복도 천장에서 연기가 자욱한 것을 목격하고, 주방보조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뒤, 7번 룸과 대기실 복도에서 양쪽 방의 벽을 두드리며 화재사실을 알렸다.

화재신고를 접수한 후 소방차가 12대 출동하였다. 하지만, 성인 2명이 동시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출입구가 좁고 주점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차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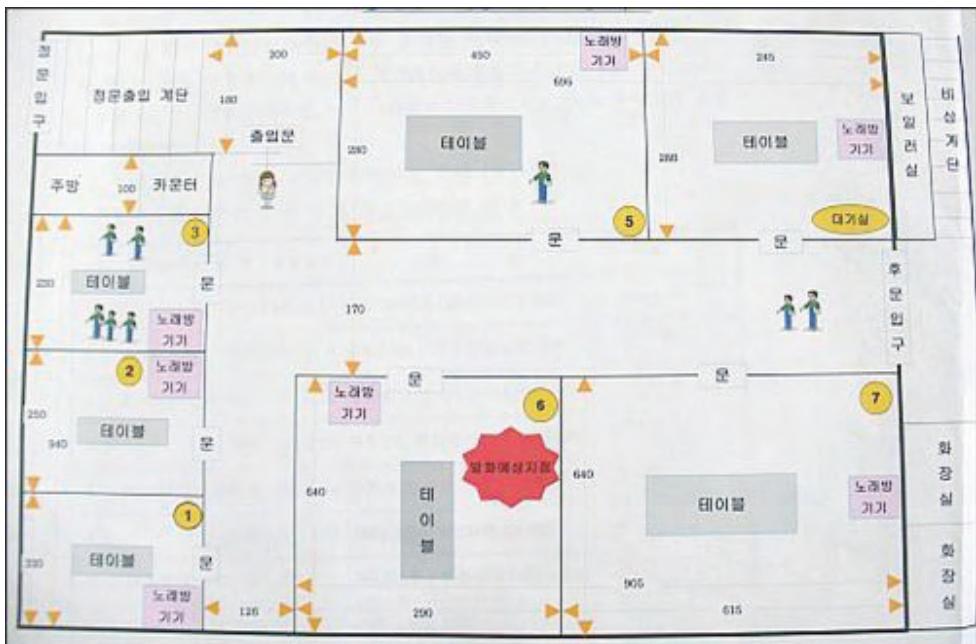
대기실에 있던 여 종업원 4명은 바로 밖으로 빠져나와 2명은 후문 비상구로 빠져나왔고, 2명은 남자 종업원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뒤에 오던 1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 간발의 차이로 7번 룸에서 나오던 손님 일행은 바로 옆에 후면 비상구가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들어온 출입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사진 1. 어른 2명이 지나가기에는 좁은 출입구
지상연결 계단



사진 2. 화재진압 현장



▲ 부산 영도경찰서가 작성한 사고당시 상황도 (부산영도경찰서 제공/노컷뉴스)

그림 1. 노래주점 화재상황 및 사상자 위치

현장 확인 결과 노래주점 총 7개 룸 중 6번 룸 천장 및 벽체, 소파 등이 전체적으로 소실되고 나머지 룸들은 그을음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사진 3. 화재발생 6번 룸 내부

6번 룸 천장 환풍기 전원선의 불완전 접촉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환풍기 플라스틱 구조물 및 주변 목재 등의 구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환풍기 캡이 그 아래 실내 소파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진전되어 천장과 소파, 벽 등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실내와 천장으로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해상황

지하1층 전체 면적 중 50%를 차지하는 노래방의 85%가 소실되었다. 당시 노래방에는 손님 8명, 남자 종업원 1명, 여자 종업원 4명, 주방 아줌마 1명 총 14명이 있었다. 사상자는 화재가 발생한 6번 룸이 아닌 입구 쪽 3번 룸에서 5명, 5번 룸에서 1명, 후문입구 앞에서 2명, 출입구 앞 쪽에서 1명이 발견되었다. 지상 1층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은 연기에 놀라 대피하였고, 지상2~6층 숙박업소에서의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4. 3번 룸(사망5명)

IV. 실내사격장

1. 일반사항

- 소재지 : 부산시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14일 14시 23분 경
- 발화장소 : 실탄사격장
- 재산피해 : 45,000천원
- 인명피해 : 16명(사망 15명, 부상 1명)
- 발화원인 : 화약 폭발

2. 건물현황

화재건물은 양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5층 건물이며, 연면적 1,155.7m², 바닥면적 227.43m²이다. 2층에 위치한 실내사격장은 실제 사격을 하는 사격실과 대기하는 공간인 휴게실로 크게 구분되며, 사격장 내부 벽체 및 천장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스펀지형 흡음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휴게실은 소파 및 가구 등이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3.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도중 폭발음을 수반한 화재가 일시에 확대되었다. 이 사고로 일본관광객 10명, 한국인 5명으로 15명이 사망하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원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정밀감정 결과 사격장 발사대 내의 잔류화약에 의한 강력한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격장 실내 CCTV에 기록된 화면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보면 불은 14일 오후 2시 23분 46초에 1번 사대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강한 빛과 함께 시작되어 강한 섬광과 함께 붉은 화염이 번졌다. 불이 난 지 3초 후 4, 5번 사대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과 종업원이 급하게 대피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사격장 벽면 흡음재는 이미 불길이 옮겨 붙어 있었다. 4초 후에는 사대 내부가 강한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격을 하면 총탄 속 화약의 10% 가량이 격발지점 반경 1m 내에 쌓이며 잔류화약이 강한 화염과 압력, 많은 양의 연기를 뿜어낸 가장 유력한 가연성 물질이라고 이번 화재가 급격히 번진 이유를 설명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번 사대 바로 앞 사로에 적치되어 있던 풍선 등 가연물 더미에서 불빛이 보이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CCTV 판독에서 나타났다.



그림 1. 실내사격장 구조 및 화재상황

계란판 모양으로 생긴 폴리우레탄 재질의 흡음재 구멍 안쪽에 많은 양의 잔류화약이 쌓여 있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착화원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흡음재 속 잔류화약에 연쇄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마치 성냥갑 여러 개에 동시에 불이 붙을 때처럼 급격한 연소와 강한 압력을 동반한 화학적 폭발이 함께 생기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사진. 화재발생 현장(1층)

4. 피해상황

소방대 도착시 화재건물 내부에 화염과 농연이 가득 차 있었다. 건물 외부로 자력 대피한 4명, 사격장 출입구 부근과 계단 부근에 쓰러져 있던 5명 등 사상자 9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사격장 내부에 7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실내임에도 출입구로 탈출하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망자들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실내에서 급격한 연소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병원으로 이송한 부상자 전원이 화재 발생 후 즉시 대피하였음에도 전신화상을 당한 점으로 미루어 강한 열기에 순간적으로 온 몸이 노출 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사망한 10명 이외 5명은 치료 중 사망하였다.

- 인명피해 : 사상자 16명(사망 15명, 부상 1명)

 일본인 사망 10명·부상 1명 / 내국인 사망 5명

 현장사망 10명, 치료 중 사망 5명

- 재산피해 : 45,529천원(부동산 42,889원, 동산 2,640천원)

 2층 바닥면적 227.430m² 중 180m² 및 비품 등 소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위험특성 및 예방대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영세성이 심화되어 있는 업종이 많아 영업이익을 위하여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장애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소홀,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사용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제정(2009.07)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및 피난을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자는 자발적인 화재안전의식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난 및 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경로의 확인 등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위험특성

다중이용업소는 시설규모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갖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1.1 건축물 공간구조의 문제점

다중이용업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활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업종이다. 건물 임대비용이 싼 지하와 고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안전상 불리한 사용공간의 밀집화와 창호시설의 무창충화, 밀폐된 실내구획 등 화재 및 피난상 장애요인이 많다.

1.2 가연성 실내장식물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연성재료로 화려한 내장을 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유독가스에 쉽게 노출된다.

1.3 발화원 상존

조명, 냉난방 전기설비, 가스사용시설, 주방의 화기사용 등 화재유발 가능 요인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인해 부주의에 의한 실화와 의도적인 방화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1.4 영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업체의 영세성이 심화되어 있는 업종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법적 영업행태가 많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비상구 폐쇄나 피난장애물 방치 등 화재안전의식이 부족하여 사고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2. 예방대책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준의 다중이용업 관련 소방법규를 정리하여 2009년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다중이용업 허가 시 통보사항, 관계인의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설치,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한사항,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전보다 한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영업주와 종업원의 자율적 화재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 영세한 사업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이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적 대응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2.1 사회 안전시스템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소방방재청에서는 관주도의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활동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가 자율적 위험관리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다중이용업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2013.2.23.)하였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자기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변화로 민간 화재배상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으로 정부의 화재예방 및 관리기능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의 취지는 자기재산손해 외에 타인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함으로 해서 영세한 영업주의 피해보상 책임으로부터 구제하는 동시에 사고에 관련된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다. 자발적인 화재안전의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재산손해에 대한 보상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안정도 추구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규모의 다중이용업주는 자율적으로 보험가입을 매년 유지해야 할 것이고, 의무가입대상 미만의 다중이용업주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다.

2.2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관리 및 점검 강화

현행 법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실내장식물 사용을 제한하며 최소한의 소방시설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많은 사례를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던 경우가 있다. 즉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설의 효용성을 잘 알고 항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안전관련 지식이 부족한 업소 관계자들을 위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를 확인하고 피난 및 방화시설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며 업소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어야 서로의 화재안전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방서의 소방검사 또는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점검이 더욱 보강되어 빠짐없이 안전점검활동이 이루어져야 재난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다.